

[정 정 대 비 표]

■ 정정 집합투자기구 및 정정 서류

편	드	명	BNK튼튼배당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정	정	서	류
정	정	사	유
			- 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 -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및 문구 조정 -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 - 증권대차거래 및 거래비용 등 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 - 일반사무관리회사 사명 및 사옥 변경 - 환매조건부매수 문구 추가
효	력	발	생 일
			2023년 11월 24일

■ 정정대비표

[간이투자설명서]

항목	정정사유	정정 전	정정 후
[요약정보]			
투자비용	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	-	- 최근 결산일 또는 2023.11.06 기준으로 업데이트
투자실적 추이(연평균수익률)	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	-	- 최근 결산일 또는 2023.11.06 기준으로 업데이트
운용전문인력	-	-	- 2023.11.06 기준으로 업데이트
주요투자위험	문구 조정	-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위험: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및 수익증권 전부의 환매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투자자의 동의없이 이 투자신탁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위험: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u>1년(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한 후 2년)</u> 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u>1년(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한 후 2년)</u> 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및 수익증권 전부의 환매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투자자의 동의없이 이 투자신탁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과세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	- <u><문구 추가></u>	- <u>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자신탁</u>

		- <문구 추가>	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시 연금소득(연금수령시), 기타소득 또는 퇴직소득(연금외수령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과세하며, 관련 사항은 “연금저축계좌 설정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퇴직연금제도의 세제: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 시 관련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 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	--	------------------------	--

[투자설명서]

항목	정정사유	정정 전	정정 후
[요약정보]			
투자비용	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	-	- 최근 결산일 또는 2023.11.06 기준으로 업데이트
투자실적 추이(연평균수익률)	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	-	- 최근 결산일 또는 2023.11.06 기준으로 업데이트
운용전문인력	-	-	- 2023.11.06 기준으로 업데이트
주요투자위험	문구 조정	-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위험: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및 수익증권 전부의 환매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투자자의 동의없이 이 투자신탁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위험: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u>1년(법 시행령 제81조제3항 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한 후 2년)</u>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u>1년(법 시행령 제81조제3항 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한 후 2년)</u>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및 수익증권 전부의 환매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투자자의 동의없이 이 투자신탁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과세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	- <문구 추가>	-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

		- <문구 추가>	자산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시 연금소득(연금수령시), 기타소득 또는 퇴직소득(연금외수령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과세하며, 관련 사항은 “연금저축계좌 설정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퇴직연금제도의 세제: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 시 관련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 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	-	- 2023.11.24: 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및 문구 조정,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 증권대차거래 및 거래비용 등 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 일반사무관리회사 사명 및 사옥 변경, 환매조건부매수 문구 추가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	-	- 2023.11.06 기준으로 업데이트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 환매조건부매수 문구 추가, 오기 정정	가. 투자 대상 ① ~ ② (생략) ③ 단기대출 및 금융기관에의 예치: 집합투자업자는 --- (생략) --- 있습니다. - <신설> - 다음 각호의 --- (생략) --- 합니다. 1. ~ 2. (생략)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회계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4. ~ 5. (생략)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주요 투자 대상] (1) BNK배당증권모투자신탁1호(주	가. 투자 대상 ① ~ ② (현행과 동일) ③ 단기대출 및 금융기관에의 예치: 집합투자업자는 --- (생략) --- 있습니다. -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 다음 각호의 --- (생략) --- 합니다. 1. ~ 2. (현행과 동일)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계약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4. ~ 5. (현행과 동일)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주요 투자 대상] (1) BNK배당증권모투자신탁1호(주

		식) ① ~ ⑧ (생략) ⑨ 증권의 대여 <u><주석 추가></u> ⑩ 투자증권의 차입 <u><주석 추가></u> ⑪ 단기대출, 금융기관에의 예치: 수익증권의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1. ~ 2. (생략) 3. <u><신설></u> ⑫ (생략) 주1) 투자비율은 투자신탁재산 자산 총액에 대비하여 산출 1. ~ 2. (생략)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u>회계기간</u>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4. ~ 5. (생략) 나. (생략)	식) ① ~ ⑧ (현행과 동일) ⑨ 증권의 대여 주2) 집합투자기구의 이익 증대 등 다음과 각 목과 같은 목적을 위해 증권 대여를 진행할 수 있음 1. <u>수익률 증진: 부수적인 운용전략으로 대차거래를 통해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으며, 안정적 대차거래 관리와 장기적 관점의 대차 수수료 수익을 추구</u> 2. <u>기타 효율적, 안정적 운용</u> ⑩ <u>증권의 차입</u> 주3) <u>효율적 운용, 보유 자산의 시장위험 해지, 환매 대응, 유동성 확대, 담보제공 등의 목적을 위해 증권 차입을 진행할 수 있음</u> ⑪ 단기대출, 금융기관에의 예치: 수익증권의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1. ~ 2. (현행과 동일) 3. <u>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u> ⑫ (현행과 동일) 주1) 투자비율은 투자신탁재산 자산 총액에 대비하여 산출 1. ~ 2. (현행과 동일)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u>계약기간</u>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4. ~ 5. (현행과 동일) 나. (현행과 동일)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및 문구 조정, 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가. ~ 나. (생략) 다. 기타 투자위험 -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위험: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가. ~ 나. (현행과 동일) 다. 기타 투자위험 -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위험: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u>1년(법 시행령 제81조제3항</u>

	확정	50억 미만인 경우,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및 수익증권 전부의 환매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투자자의 동의없이 이 투자신탁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위험 추가>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 집합투자업자는 설정 후 3년이 경과한 펀드의 경우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투자신탁 위험등급을 매우 높은 위험(1등급)에서 매우 낮은 위험(6등급)까지 6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은 <u>20.3264%</u>이며, 6단계의 투자위험등급 중 2등급(높은 위험)으로 분류됩니다. (최근결산일 : <u>2022.10.01</u>)	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u>설정 후 2년</u>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 미만인 경우,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u>1년(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후 2년)</u>이 지난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및 수익증권 전부의 환매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투자자의 동의없이 이 투자신탁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증권대차거래 위험: 증권대차거래가 일어나는 펀드의 경우 예탁결제원 등 시장참여자들의 관리로 발생할 가능성은 극히 낮으나 해당 대차증권의 미상환, 관련 담보의 부족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 집합투자업자는 설정 후 3년이 경과한 펀드의 경우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투자신탁 위험등급을 매우 높은 위험(1등급)에서 매우 낮은 위험(6등급)까지 6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은 <u>15.1652%</u>이며, 6단계의 투자위험등급 중 2등급(높은 위험)으로 분류됩니다. (최근결산일 : <u>2023.10.01</u>)
11. 매입, 환매, 전환 기준	규약 신설 반영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청구)	가. (생략) 나. 환매 (1) ~ (4) (생략) (5) <신설>	가. (현행과 동일) 나. 환매 (1) ~ (4) (현행과 동일) (5) <u>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청구</u>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가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한 경우 <u>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대금으로 환매에 응하지 않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여야 한다.</u> 다만, 이 투자신탁이 보유중인 금전 등으로

		(5) (생략) (6) (생략) (7) (생략) (8) (생략) 다. (생략)	<u>환매에 충분히 응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u> (6) (현행과 동일) (7) (현행과 동일) (8) (현행과 동일) (9) (현행과 동일) 다. (현행과 동일)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	1) ~ 2) (생략) 가. (생략)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	1) ~ 2) (현행과 동일) 가. (현행과 동일)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 최근 결산일 기준으로 업데이트
14. 이익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문구 조정,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	가. 이익배분 - 수익자는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당해 수익증권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이하 생략) 나. 과세 투자소득에 --- (생략) --- 나누어집니다. (1) ~ (3) (생략) (4)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 Class C-P, S-P, C-Pe 및 J-Pe 가입자 [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 - 수령요건: 55세 이후 <u>10년간</u>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가입자의 수령개시 신청 후 인출) - 세액공제: [납입금액] - 해당과세기간에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①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u>400만원</u> 이내. 단, 2022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50세 이상인 거주자는 납입액 600만원 이내 ② 상기①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가. 이익배분 - 수익자는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u>당해 종류 수익증권</u> 기준 가격으로 당해 <u>종류</u> 수익증권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이하 현행과 동일) 나. 과세 투자소득에 --- (생략) --- 나누어집니다. (1) ~ (3) (현행과 동일) (4)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 Class C-P, S-P, C-Pe 및 J-Pe 가입자 [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 - 수령요건: 55세 이후 <u><삭제></u>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가입자의 수령개시 신청 후 인출) - 세액공제: [납입금액] - 해당과세기간에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①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u>600만원</u> 이내. <u><삭제></u> <u><삭제></u>

	경우에는 <u>총급여액 1억2천만원 초과</u>)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u>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300만원 이내</u> ③ (생략) [세액공제] -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납입금액의 13.2%에 대해 세액공제. 단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u>4천만원</u>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납입금액 16.5%에 대해 세액공제 - 부득이한 연금외 수령 사유: 천재지변 /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소득세법 제50조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한함)의 질병·부상에 따른 3개월 이상 요양 /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영업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신설> (5) 퇴직연금제도의 세제 : Class C-P2, C-P2e 및 J-P2e 가입자 - 세액공제: -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u>400만원</u> 이내의 금액)과 연 <u>700만원</u> 중 적은 금액으로 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50세 이상인 거주자는 해당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과 연 900만원 중	② (현행과 동일) [세액공제] -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납입금액의 13.2%에 대해 세액공제. 단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u>4천 500만원</u>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납입금액 16.5%에 대해 세액공제 - 부득이한 연금외 수령 사유: 천재지변 /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소득세법 제50조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한함)의 질병·부상에 따른 3개월 이상 요양 /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영업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u>연금계좌 가입자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1항제2호의 재난으로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u> (5) 퇴직연금제도의 세제 : Class C-P2, C-P2e 및 J-P2e 가입자 - 세액공제: -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u>600만원</u> 이내의 금액)과 연 <u>900만원</u> 중 적은 금액으로 합니다. <삭제>
--	---	--

		적은 금액으로 하되,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억2천만원 초과)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300만원 이내의 금액)과 연 700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합니다. -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13.2%에 대해 세액공제. 단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u>4천만원</u>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납입금액 16.5%에 대해 세액공제 ※ 위 세율은 지방소득세(원천징수세액의 10%)를 포함한 세율입니다.	-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13.2%에 대해 세액공제. 단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u>4천 500만원</u>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납입금액 16.5%에 대해 세액공제 ※ 위 세율은 지방소득세(원천징수세액의 10%)를 포함한 세율입니다.
--	--	---	---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	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	-	- 최근 결산일 또는 2023.11.06 기준으로 업데이트
1. 재무정보	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	가. 요약재무정보 - <항목 추가>	가. 요약재무정보 -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 <주식의 매매회전율>

제4부. 집합투자기구의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	-	- 2023.11.06 기준으로 업데이트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신탁업자)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가. (생략) 나. 주요업무 (1) (생략) (2) 신탁업자의 의무와 책임 [의무] ① ~ ② (생략) ③ 신탁업자의 확인사항 ↳ 투자설명서가 법령·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의 여부 / 기준가격 산정이 적정한지의 여부 /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 운용지시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내역 / 투자신탁재산별 자산배분내역 및 배분결	가. (현행과 동일) 나. 주요업무 (1) (현행과 동일) (2) 신탁업자의 의무와 책임 [의무] ① ~ ② (현행과 동일) ③ 신탁업자의 확인사항 ↳ 투자설명서가 법령·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의 여부 / 기준가격 산정이 적정한지의 여부 /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 운용지시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내역 / 투자신탁재산별 자산배분내역 및 배분결

		과 등 (이하 생략)	과 / 투자신탁재산 명세서와 신탁업자가 보관·관리 중인 투자신탁재산의 내역이 일치하는지 여부 등 (이하 현행과 동일)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일반사무관리회사 사명 및 사옥 변경	가. 회사의 개요 - 회사명: <u>신한아이타스 주식회사</u> - 주소 및 연락처: <u>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70 ☎ 02-2168-0400</u> - 회사연혁 등(홈페이지 참조): <u>www.shinhanaitas.com</u> 나. (생략)	가. 회사의 개요 - 회사명: <u>신한펀드파트너스 주식회사</u> - 주소 및 연락처: <u>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28 ☎ 02-2168-0400</u> - 회사연혁 등(홈페이지 참조): <u>www.shinhanfundpartners.com</u> 나. (현행과 동일)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및 문구 조정	[의무해지] 집합투자업자는 --- (생략) --- 합니다. ▶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 투자신탁의 피흡수 합병 /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 [임의해지] 집합투자업자는 --- (생략) --- 합니다. ▶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 해당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해당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이하 생략)	[의무해지] 집합투자업자는 --- (생략) --- 합니다. ▶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 투자신탁의 피흡수 합병 /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다만, <u>법 제6조 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u>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u>법 시행령 제224조의2</u> 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임의해지] 집합투자업자는 --- (생략) --- 합니다. ▶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 해당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u>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한 후 2년</u>)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해당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u>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한 후 2년</u>)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이하 현행과 동일)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문구 조정	가. (생략) 나. 수시공시	가. (현행과 동일) 나. 수시공시

		(1) (생략) (2) 수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u>생략</u>)--- 합니다. 1. ~ 7. (<u>생략</u>) 8.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u>1년</u>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존속하는 동안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에 한함) 9.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u>1년</u>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존속하는 동안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에 한함) 10. (<u>생략</u>) (3) (<u>생략</u>)	(1) (현행과 동일) (2) 수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u>생략</u>)--- 합니다. 1. ~ 7. (<u>현행과 동일</u>) 8.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u>1년</u>(<u>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한 후 2년</u>)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존속하는 동안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에 한함) 9.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u>1년</u>(<u>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한 후 2년</u>)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존속하는 동안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에 한함) 10. (<u>현행과 동일</u>) (3) (<u>현행과 동일</u>)
--	--	---	--

<끝>.